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2년 03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함.
- 나.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 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 추진과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등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6조)
- 다.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라. 우선구매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 물품을 지정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교육감은 우선구매 대상 물품 중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생산시설의 생산품은 특히 우선구매 하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63, 팩스 032-440-8784, 이메일 : jjhong7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범위는 교육감의 관할에 속하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장애인복지법」 제44조제1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교육감은 인천광역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우선구매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8조(사회공헌시설 우선구매) 교육감은 제7조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중 인천광역시에서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은 특히 우선구매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장애인생
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
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
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
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체사항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4조(생산품 구매) 제45조(생산품 인증)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생산품 구매 등) 제29조(국가등의 구매 의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제16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기준 등)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관련법규 정비대상	.
관련자료	.

관계법령 발췌사항

【장애인복지법】

제44조(생산품 구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 안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목과 물량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며, 수의계약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생산품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일 : 2012.7.27] 제44조

제45조(생산품 인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촉진·품질향상 및 소비자와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생산품 구매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에서 국가등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이하 "우선구매대상물품"이라 한다)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우선구매비율은 우선구매에 드는 금액이 국가등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해당 품목의 총 구매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할 것. 이 경우 다른 업체 등에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명 이상이 참여할 것
3.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장애인일 것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 1명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과 그 품목을 고시하고,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그 품목을 생산할 때에 계속하여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의 원활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신청의 접수와 납품을 대행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시설간 생산량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는 우선구매대상물품을 공급할 때에 국가등이 요구하는 품질의 기준을 충족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44 조제2항에 따라 국가등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으로 한다.

제29조(국가등의 구매 의무) ① 국가등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생산한 물품 구매를 요청받으면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등의 우선구매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구매 실적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물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애인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국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선구매대상물품의 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등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1.8.4>

1.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 · 정신장애인 · 호흡기장애인 · 언어장애인
2.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 · 심장장애인
3.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 지체장애인 · 청각장애인 · 신장장애인 · 뇌전증장애인 · 간장애인 · 안면장애인 · 장루 · 요루장애인
4.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1.8.4>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21>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에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8.4>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3.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포함한다)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④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8.4>

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

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2.1.26>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④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8.4>

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 2012.7.27] 제7조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1.8.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기관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다)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2.2.3>

[제목개정 2012.2.3]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2.3>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2.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제16조(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3>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2.3>

[제목개정 2012.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